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.

발 의 자 : 박상웅 · 주진우 · 서일준
김도읍 · 윤한홍 · 이인선
조은희 · 강승규 · 배준영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%를 감면하고,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,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,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,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, 제14조제3항,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67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.

-----.